

의안번호	제194호
------	-------

발의연월일

2023. 11. 14.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이길원 의원 외 7명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길원 의원 대표 발의)

의 번 호	제 194 호
-------------	---------

발의연월일 : 2023년 11월 14일

발의자 : 이길원, 이상우, 임종용,
박중수, 장순관, 심완예,
김영진, 이정순

1. 제안이유

충청남도와 예산군의 의료환경 개선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 공공의료서비스의 확충을 위하여 국립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의과대학 유치에 필요한 지원 및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료취약지 문제 해소와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나. 의과대학 유치계획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의과대학 유치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마. 유치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0조)
- 바. 협조요청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 「지방자치법」 제28조, 제29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타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2) 입법예고 : 2023. 11. 17. ~ 11. 23. [7일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2】

4)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 3】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와 예산군의 취약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국립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의과대학 유치에 관한 제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국립공주대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범군민적 참여 유도 및 관련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유치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국립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
2.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시책 개발
3.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교류·협력 및 홍보
4. 그 밖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유치사업) 군수는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의과대학 유치 관련 위원회 등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3. 그 밖에 군수가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사항)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의과대학 유치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과대학 유치사업 추진에 사무의 협조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유치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의과대학 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국립공주대학 의과대학 유치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주요 정책
2. 의과대학 유치계획 수립 및 지원
3. 의과대학 유치 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2. 관내 대학교를 비롯한 관련 교육기관의 대표
3. 시민, 사회, 경제, 의료분야 대표

4. 유관 기관·단체 대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운영) ① 회의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군의 의과대학 유치 지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이를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협조요청 등) ① 군수는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단체에 자문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문 등 협조를 요청할 경우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군수는 의과대학 유치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행일부터 중앙정부의 의과대학 신설 확정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붙임 1】

□ 「지방자치법」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28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이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897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붙임 2】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2. 미첨부 근거 규정: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예산군의회 이길원 의원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예산099							
정책명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부서명	의회사무과						
	담당자명	김정환	전화번호	041-339-7077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11월 1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의회사무과)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한 사항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가족지원과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용미/041-339-7912)								
의회사무과장 귀하								